

「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견 서

(김경훈 의원)

2024. 12.

기후환경본부

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입니다.

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,

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

교육위원회 김경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

의안번호 제2158호,

「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 조례안은

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

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지원 및 안전 관리 조항을 신설하고,

수소 충전 업무의 일원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

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

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지원 및 안전관리를 위한

개정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.

우선, 안 제7조2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과

안 제7조의7의 제1항의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

상위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.

- 안 제7조의7 제2항 및 제3항의 충전시설 인증·홍보와 관련하여, 우리시는 이미 서울형 충전기 인증제를 도입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인증 기준을 수립해 충족하는 시설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해당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.

- 또한, 안 제11조 업무의 위탁 내용과 관련하여 제2호의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및 인증에 관한 업무, 제4호의 홍보 및 교육에 관련한 업무 신설 취지에 대해 동의합니다.

- 다만, 제11조의 업무의 위탁 대상과 관련하여 업무의 다양성을 위해 위탁기관을 서울에너지공사로만 제한하고 전문기관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현행대로 유지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.

-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